

평생교육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과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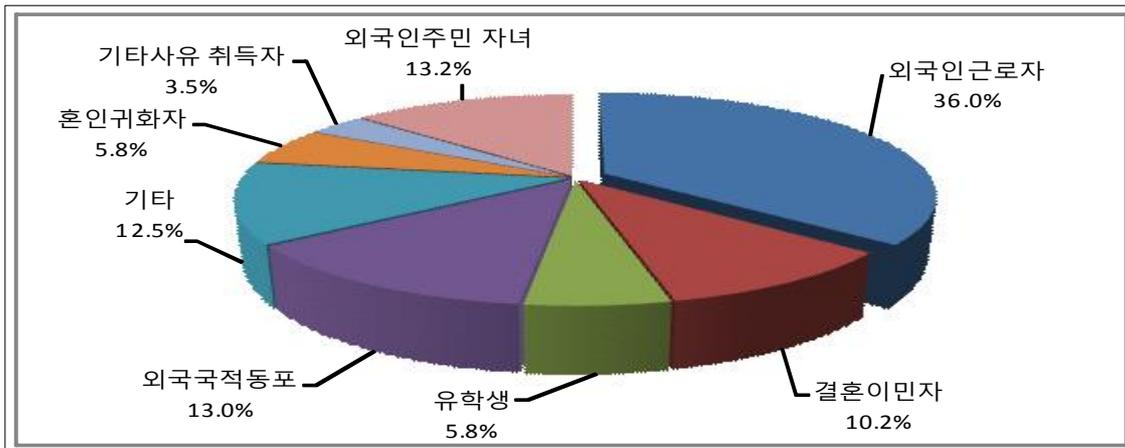
백 은 순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센터장)

박 형 민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책임관)

I. 문제 제기

우리사회는 국제적으로는 전 지구적 글로벌화의 가속화로, 국내적으로는 계속되는 저출산, 저임금 노동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13년 1월 기준(여가부, 2013)으로 국내체류 외국인 수는 전체 인구의 3%에 달하는 144만여 명(귀화자 포함)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01년의 57만 명 대비 약 3배 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이중 우리 사회에 장기 정착하게 될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소위, 다문화가정 자녀²⁾)의 수 또한 각각 23만 여 명과 19만 여명으로 최근 10여년 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현장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편입학이 늘어남에 따라 2013년 현재 다문화학생수는 5만 5천여 명(전체학생수의 0.86%)에 이르며, 다문화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학교 수도 전국 초·중·고 11,712개교 중 약 90%에 달하고 있다.

[<표 1>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 출처: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안전행정부, 2013)

1) 본 원고는 2013년 9월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개최한 제 1회 다문화교육포럼에 수록된 내용을 재구성.
 2) 여기서 다문화학생은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관련정책에 통용되는 용어로 ①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국내출생 다문화자녀(국적법 제 2조 1항에 의거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 취득), ② 외국에서 출생, 일정 기간 생활해오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부 혹은 모를 따라 학령기에 국내에 입국한 중도입국자녀, ③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외국인자녀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인 이주민들의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지원과 조화로운 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차원의 소위 ‘다문화교육’ 정책사업들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정부부처 중 다문화교육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의 경우 다문화학생들의 원활한 공교육적응 지원,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교육내실화, 다문화친화형 학교환경 구축 등 세 가지 큰 틀에서 다문화교육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가부의 경우 결혼이주여성과 학령기전 영유아 자녀를 주 대상으로 한 언어교육, 상담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법무부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및 국적취득을 준비하는 이민자들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정부주도 다문화교육관련 정책사업들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문화가정 구성원들, 특히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초기적응을 위한 언어교육 및 한국문화이해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서구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볼 때, 향후 이주민들이 계속 유입되는 상황에서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문화 갈등과 충돌의 발생,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혹은 대처하기 위한 사회통합차원의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 증대, 더 나아가,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업안정성 제고를 위해 평생교육차원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표출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볼 때, 현재 우리의 다문화교육관련 정책기조와 내용들은 이러한 예견되는 새로운 학습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주민들의 전생애주기와 이를 고려한 적절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이라는 평생교육차원의 접근과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더 나아가,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이들과 함께 살아갈 선주민(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차원의 시민교육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적 접근 또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이주민 145만 명의 다문화시대를 맞아 조화로운 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주도(특히, 교육부) 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과 특징, 제한점 등을 살펴보고,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다문화교육 연계의 필요성 및 연계방안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다문화교육 정책의 현황과 특징 : 교육부 다문화교육정책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및 관계부처 종합지원을 담은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 여가부를 포함한 12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6대 영역, 86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다문화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다문화교육관련 정책은 크게 교육부, 여가부,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가부의 경우 관계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국 212개)를 중심으로 다문화구성

원(특히, 결혼이주여성, 영유아자녀)대상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을 비롯, 복지, 상담,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관공서 등 다문화가족지원관련 공공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산하 거점·일반운영기관(전국 269개)을 통해 성인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초기정착을 위한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등의 교육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교육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부의 최근 다문화교육정책 현황과 특징 그리고 제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부 다문화교육 정책 현황: ‘다문화학생교육 선진화 방안’ 중심으로

교육부는 2006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교육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가장 최근의 교육부 다문화교육정책 동향은 지난 2012년 3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다문화학생교육 선진화 방안’과 이 방안을 모태로 올해 3월 발표한 ‘다문화학생 교육지원계획³⁾’을 통해 그 기본적인 골격과 성격을 알 수 있다.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은 다문화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정책방향 수립, 다문화학생의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필요,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전 사회적 협력 체계 구축 필요라는 세 가지 추진배경을 명시하면서, 이러한 배경 하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문화교육관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크게 3 가지 정책과제로 ① 공교육 진입을 위한 윈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② 다문화학생 교육 내실화 및 재능 발현 ③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및 다문화학생 교육을 위한 지원 전달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과제별 구체적인 세부사업내용을 담고 있다. 3 가지 정책과제의 기본 목표와 주요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증하고 있는 중도입국 자녀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원활한 공교육진입 지원을 위한 윈스톱 서비스 체제구축을 도모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에 다문화 예비학교(2013년 ‘글로벌 선도학교 예비형’ 명칭변경)의 운영함으로써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을 지원해나가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문화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다문화가정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안내 및 학교편입학관련 서류 준비 및 학교배정(예비학교 및 정규학교), 학사상담지원 등 다문화학생의 입국부터 학교적응까지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다문화학생 교육 내실화 및 재능 발현을 위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학생들을 위해 지난 2012년 한국어(Korean as a Second

3) 다문화교육 주무부처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에서 지난 2013년 3월 발표한 ‘다문화학생 교육지원계획’의 기본 골조는 2012년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방안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Language)교재를 개발하였으며, 올해에는 글로벌 선도학교 연구형(32개교)을 통해 한국어(KSL)교육과정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이 1:1로 멘토, 멘티로 활동하는 다문화학생 멘토링 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적응 및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 능력을 활용한 이중언어 교육강사 양성 및 배치사업을 통해 일선학교에서 다문화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의 이중언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과 관련해서는 우선, 다문화학생 및 일반학생의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글로벌 선도학교를 지원하고 있다(집중지원형, 거점형, 예비형, 연구형, '13년 기준 전국 200개 교 지정). 또한,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통해 다문화 이해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여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교원 및 학교관리자 대상 교원연수의 체계화 및 의무화를 통해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강화, 다문화가정 학부모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학부모들의 자녀양육 지원과 사회참여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추진체계를 정비 중에 있다. 우선, 다문화교육 정책사업 추진의 허브기관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다문화교육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 다문화전담부서 지정 및 신설, 시도교육청산하 지역다문화교육센터의 설치·지정 운영, 그리고, 지역단위 다문화교육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2006년부터 본격 추진해 온 다문화교육 정책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다문화학생, 특히 중도입국자녀들이 공교육에 원활히 진입,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지원체계의 도입과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점, 글로벌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한 일반학교에서 학생들의 다문화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는 점, 일반교원들의 다문화인식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도입, 운영 등을 들 수 있겠다.

2. 교육부 '다문화교육' 정책의 특징과 제한점

교육부 다문화교육관련 정책의 특징과 제한점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의 다문화교육정책이 대상중심(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른 다문화교육 내용도 상당히 제한적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현재 다문화교육정책사업은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결혼이주 여성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들이 원활하게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엄마 나라의 문화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국제이해교육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이주성인을 포함한 일반성인대상의 다문화교육정책사업은 전국 14개 교육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부모 역량강화 교

육프로그램과 이중언어강사 양성사업이 전부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그 내용이 자녀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부 현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이주성인들의 평생교육차원의 다양한 학습욕구(예를 들어, 직업능력개발,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등)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들의 다문화인식제고를 위한 글로벌 시민교육 차원의 정책적 접근과 교육지원 또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둘째, 현재 다문화교육정책을 통해 일선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실제 내용이 대부분 문화이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앞서 살펴 본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방안’을 비롯, 작년 말 여가부에서 12개 관련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 2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사회가 어떠한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지(다문화사회 이념), 그리고 어떠한 목적과 내용을 담은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정작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지원하는 글로벌 선도학교사업의 경우 다문화교육에 대한 개념정립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 일부 학교에서는 일반학생대상으로 이주민들의 전통문화이해에만 초점을 맞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역으로 다문화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다문화가정 구성원(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한국문화이해교육 등이 행해지고 있다. 더 나아가, 다문화학생(특히, 중도입국자녀)들의 언어·문화적 미숙함을 우려해 일반학생과 유리된 분리교육만을 실시, 장기적 차원에서 이들의 한국사회 자립능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정책상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제한점들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다문화교육정책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다문화사회의 방향,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제인 다문화교육의 기본 목적과 방향성, 이에 터한 장기 정책적 비전이 부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저명한 다문화교육 학자인 제임스 벅크스의 다문화교육관련 논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그는 다문화교육이 추구해야 할 기본 목적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① 다른 문화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인식함으로써 자기 이해 증진, ②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다양성 교육, ③ 자문화, 주류문화, 타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태도 습득, ④ 소수 인종·민족 집단이 그들의 인종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것, ⑤ 글로벌하고 평등한(flat) 기술세계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읽기, 쓰기, 수리적 능력을 습득하도록 지원, 마지막으로 ⑥ 자신이 속한 문화공동체, 시민공동체, 지역문화, 글로벌 공동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의 습득 지원으로 정의내리고 있다(모경환 역,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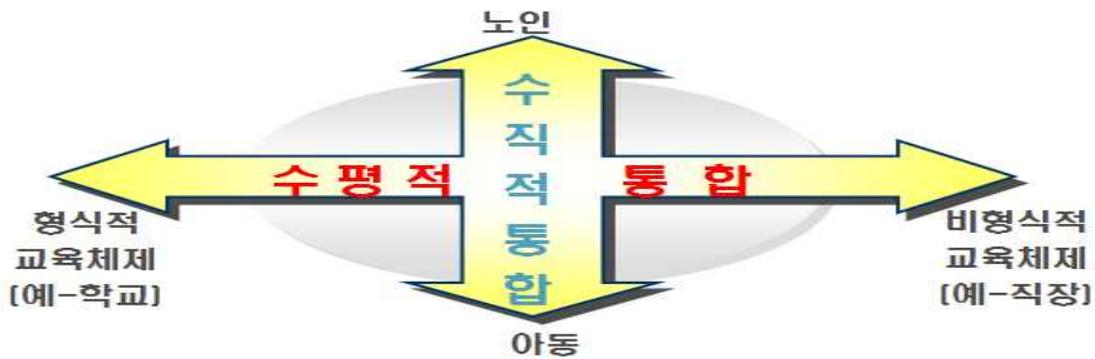
벅크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주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다문화교육은 대상(이주민)이 아니라 이념 및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교육은 첫째,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류사회 적응교육을 넘어, 이주민을 포함한, 소수

자, 여성, 사회·문화적 취약계층 등 사회 소수자들의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 일반인들의 반편견·반차별교육과 함께, 둘째 공존의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회구성원들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성숙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교육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다문화교육은 평생교육의 6대 영역중 하나인 시민참여교육, 더 세부적으로 글로벌 시민교육과 일맥상통한다. 즉 이와 같은 다문화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평생교육에서 말하는 시민참여교육,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은 저절로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문화교육과 평생교육 양자의 연계 접점을 찾을 수 있겠다.

III. 평생교육시각에서 다문화보기

1. 평생교육의 개념과 영역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경우 1999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평생교육 진흥’ 명시한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제도적, 실천적 차원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 2조에 따르면,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평생교육 이념을 확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유네스코를 비롯한 대부분의 평생교육관련 학자와 실천가들은 앞서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상에 나와 있는 협의의 개념보다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보다 넓은 의미에서 평생교육을 ‘한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수직적)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수평적)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인’ 동시에 이러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체제개혁의 근본원리’로 정의하고 있다(김중서 2009, UNESCO 1972).⁴⁾



[<그림 1> 수평적, 수직적 통합원리로서의 평생교육]

4) 평생교육을 위와 같이 대상과 영역 및 교육체제개혁 원리로 정의하는 방식과는 달리, 교육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학계 일부에서 있어 왔다. 예를 들어 한승희(2009)는 영역과 대상이 한정된 실천영역을 지칭하는 사회교육과 대비하여, 평생교육은 교육을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일종의 선택된 이론체계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 2조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교육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서 평생교육의 6대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법률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평생교육의 진흥과 함께 모든 국민들이 평생교육의 혜택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상위법인 헌법 제 29조 5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를 시작으로, 교육기본법 제 3조의 경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언급하면서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 4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반, 중앙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비롯, 광역지자체 단위의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기초지자체단위의 평생학습관, 그리고 각종 민간 평생교육시설과 단체를 중심으로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2. 평생학습인으로서의 이주민 바라보기

앞서 2절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이주민들(특히 이주성인들)의 경우 초기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욕구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차원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가지고 있다. 실제, 교육부 위탁사업 중 하나인 다문화가정학부모 역량강화사업의 자녀교육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상당수의 학습자들은 이주민 자신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자아실현으로서의 학위 취득,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참여 등을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학습욕구들은 향후 이주민들이 한국사회 초기 정착과정을 지나면서 더욱 다양해지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주민들의 평생교육 차원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대해 현재 다문화교육관련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주민들을 우리사회 주류문화와는 다른 문화배경을 가진 ‘이질적 주민’으로만 보거나, 이주민을 단순히 노동력으로 때로는 출산의 기제로 보는 우리 사회의 편향된 시각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자체는 사실상 다문화와 관련된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주민을 하나의 이질적인 단일 집단으로 보아 우리와는 다른 그 무엇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 역시 단지 인종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자의 일부가 약간 다를 따름이며, 그 안에 다종다양한 욕구가 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며, 보편적 학습욕구를 지닌 평생학습인으로 본다면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본다. 특히 법적으로 우리 국민인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들만을 위한 정책을 계속하여 수립하고 집행하기 보다는 같은 평생학습인으로서 삶에 대한 욕구, 학습에 대한 욕구를 가진 보편적인 평생학습인임

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민들의 다양한 평생교육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의 대상인 이주민들을 평생학습인으로서 재조명하고, 더 나아가 현재의 다문화교육정책·시스템과 평생교육 정책·시스템간의 연계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3. 평생교육과 다문화교육 연계의 내용과 방법

2013년 현재 국내체류 이주민들의 30%이상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업연한 국민이며, 따라서, 앞서 평생교육관련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정책사업과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평생교육차원에서 평생학습인으로서 이주민들의 평생학습기회 제고와 함께 다문화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평생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연계방안(연계내용 및 방법)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림 2> 평생교육의 세 가지 이념적 목표]



현재 한국의 평생교육은 개인의 전인적 자아실현, 고용가능성 증진,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세 가지 이념적 목표 하에 평생교육 6대 영역인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평생교육서비스를 평생교육정책사업과 추진체계를 통해 일반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사업을 보더라도 그 안에는 문해교육, 지역평생교육활성화사업,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교육 연수, 평생교육사 제도 등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의 추진체계와 다문화 정책의 추진체계가 달라, 평생교육 사업과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교육관련 정책과의 교류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생학습인으로서 이주민들의 경우 우리사회의 업연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바 이들이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평생교육서비스의 혜택을 지역사회내의 각종 평생교육시설과 기관을 통해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안내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이

주민들에 대한 선주민의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반차별·반편견교육, 더 나아가,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공존하면 살아가는 필요한 문화감수성 및 문화간 소통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글로벌 시민교육 또한 필요하다. 우리의 평생교육 6대 영역 중에서 사실상 시민(참여)교육,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교육 부문이 매우 취약한데 이 부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늦어지면 결국 다문화시대 건설적인 사회통합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교육이 학교교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생, 학부모, 성인 가족을 모두 아우르게 되면 다문화교육과 평생교육은 공통점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교육정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정책 및 시스템과의 구체적인 연계와 통합방안에 대한 면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과 다문화 관련된 연계방안을 평생교육의 6대 영역과 관련하여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력보완교육 부문

현재 정확한 요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주민들의 경우 학력취득을 원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개인적 자아실현을 위해 혹은 보다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성인이 된 이주민들이 한국의 정규학교체제로 다시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평생교육차원에서 ‘제 2의 대안적 학위취득’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기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입, 대입 검정고시제도, 방송통신고등학교,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 등의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있도록 하는 안내와 제도적 정비 및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대안적 학위취득제도는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중심으로 관장하고 있으며, 이주성인들의 다문화교육은 교육부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여가부의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산하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 등에서 일부 관장하고 있는 바, 1) 교육부에서 이주성인이 학위취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하는 방안, 2) 이주성인들이 제 2의 대안적 학위취득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주성인들 대상으로 일부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산하 기관 등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부문

이주민들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는 이주민 대상의 교육 중에서 가장 활발한 영역으로, 여가부와 법무부 등을 중심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성인문해 교육기관에서는 전통적 비문해자들을 대상으로 언어, 수리 등을 포함한 기초문해 프로그램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문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문해 교육기관에서 이주민들이 학습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사실상 이주민과 전통적 비문해자가 동시에 학습하고 있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다. 동일하게 한국문자를 배우더라도 이주민과 전통적 비문해자의 특

성이 달라 양자가 어울리기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주민의 경우 한국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나이가 젊은데 비하여 전통적 비문해자의 경우에는 한국어 자체는 익숙한데 문자 자체에 대한 학습이 안 되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특성이 있어 양자가 어울리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이렇듯 문화적 배경, 언어구사능력의 정도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주성인과 선주민(일반인) 비문해자간에 서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상호학습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기존의 이주성인대상 한국어, 한국문화이해교육과 전통적 비문해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은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주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만을 위한 한글교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여가부 산하 20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무부 산하 268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전국 곳곳 다 관장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기초학습을 원하는 이주민들을 위하여 계속하여 또 다른 추진체계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과는 별개로 기존 구축된 성인문해 교육기관 및 해당기관의 문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비문해자를 위한 교육기관과 이주민을 위한 교육기관 양자가 각각 다른 유형의 학습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물리적 거리 때문에 오는 학습기회의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 더불어,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여가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성인문해 교육기관과의 프로그램, 강사 등의 연계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결국 각기 다른 추진체계가 대상을 제한하기 않고, 기존에 이미 구축된 시설을 연계하게 되면 교육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시민참여교육 및 글로벌 시민교육

이 부문은 현재 평생교육 6대 영역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고, 다문화교육에서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문이다. 한국은 ‘사회적 자본이 미약하다’,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비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적 편협성과 타인 수용의 어려움은 바로 이 부분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전국의 110여개의 시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이 더불어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학습 동아리 등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동체학습과 재능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부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이주여성들의 경우 자신들이 받은 교육혜택을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과 같은 사회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원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바 이들 또한 지역사회의 일환으로서 지역단위 평생학습사업, 지역공동체만들기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담당자들 간의 연계도 필요하며, 평생학습 정책사업에서도 이주민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습동아리 만들기 사업에서도 이주민이 참여하는 동아리에 보다 많은 지원을 준다면, 예산 지원시 약

간의 차등지원 등을 통해 이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디딤돌 형태의 참여기회를 제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추진체제를 만들어 구동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 일반 주민과 이주민들이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유대감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평생교육 및 다문화교육관련 정책 및 사업 기획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교육과 함께 글로벌 시민교육 또한 다문화시대에 중요한 평생교육의 한 영역이다. 마찬가지로, 다문화교육에 있어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공존의 다문화사회구현을 위해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선주민의 다문화인식제고,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상호문화이해와 소통능력의 함양이다. 즉 글로벌 시민교육은 평생교육의 한 영역이자,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뼈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서는 글로벌 시민교육 차원의 정책적 접근과 교육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평생교육차원에서도 일부 평생교육기관과 시설에서 단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일은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따라서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시민(참여)교육, 글로벌 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참신한 글로벌시민교육프로그램을 개발과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를 비롯 관련된 다른 부처 추진체계간의 연계와 협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법 상의 6대 영역에 있는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실적으로 이주민만을 위한 모든 분야의 정책과 사업을 펼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주민만을 위한 별도의 추진체제 및 기구를 확대하기보다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기존의 교육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마치 학교교육에 진입할 때 예비학급을 두어 적응을 돕는 것처럼 이주민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은 실시하되, 이들만을 위한 교육체제를 만드는 것에 앞서, 기존 추진체계간의 협력 또는 추진체계간의 업무 재조정 등이 우선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이주민들과 선주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평생교육사업에서 있어서 소외되어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배려가 필요하며, 역으로 이주민만을 위한 기관 또한 그 문호를 선주민들에게도 개방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우리사회의 새로운 식구인 이주민들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이미 도래한 다문화시대,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구현하기 위해 다문화교육의 활성화는 필수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정책은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초기적응을 위한 대상자중심(이주민, 특히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교육, 다시 말해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를 포함한 내용과 영역에 중점을 둔 다문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이주성인의 다양한 평생학습욕구, 일반인들의 성숙한 글로벌 시민의식제고와 관련된 정책적 접근과 교육지원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본 발표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주민을 평생학습인으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의 다문화교육정책이 간과하고 있는 대상과 영역을 보완, 확장하는 동시에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해 기존의 평생교육정책사업 및 추진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주민들이 평생교육 6대 영역인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평생교육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차원의 관심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주민들과 선주민들이 서로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시민교육의 활성화는 이주민들의 초기 정착을 넘어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새로운 추진체계를 구축하기에 앞서 기존 평생교육기관 및 제도, 시스템과의 적극적 연계와 활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에 터한 다문화교육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북미, 유럽 여러 국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극단적 동화주의나, 극단적인 다원주의는 자칫 공존의 다문화사회를 실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이들 국가와는 다른 국제결혼을 통한 저개발국 결혼이주여성과 단기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민의 주류를 이루는 사회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한국적 다문화사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의 제시, 이에 터한 장기적 차원의 다문화교육정책 수립 및 다문화교육 내용과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2).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방안.
- 김중서 외(2000).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 김옥순 외 역(2011).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 모경환 외 역(2008).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 박형민(2013). 다문화교육의 정책현황과 과제. 충북대학교 국제대학원 다문화 교육 관리자 직무연수 발표원고.
- 박휴용(2012). 비판적 다문화교육론. 이담북스.

- 안전행정부(2013).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 오경석 외(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 여성가족부(2013).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2012).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08). 다문화사회와 국제이해교육. 동녘.
- 차윤경 외 역(2011). 다문화교육 현안과 전망. 박학사.
- 한승희(2009). 화성에서 온 사회교육, 금성에서 온 평생교육. 평생학습사회 5(1). pp.1-18.
- UNESCO(1972). Learning To be.
- UNESCO(1996). Learning The Treasure Within.